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 번호	31
----------	----

제출년월일 : 2014. 11.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2008년 12월 31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부과기준
이 상위법령이 신설됨으로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 과태료부과·징수조례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과태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입법예고 2014.10. 1. ~ 10. 22 (21일간)결과 : 특기할 사항 없음

마.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부과·성별영향평가 등 : 저촉사항 없음.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평창군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발취(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현행	개정안																																						
<p><신설></p>	<p>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시행일 : 2009.4.1] 제33조 [별표 5] <신설 2008.12.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3조 관련)</p> <p>1. 일반기준</p> <p>가. 부과권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할 수 있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부과기준은 해당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2년간 같은 행위로 처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p> <p>2. 개별기준</p> <table border="1" data-bbox="504 913 1425 1995"> <thead> <tr> <th rowspan="2">위반사항</th> <th rowspan="2">근거법령</th> <th colspan="3">과태료</th> </tr> <tr> <th>1차</th> <th>2차</th> <th>3차이상</th> </tr> </thead> <tbody> <tr> <td>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td> <td>법제34조제1항1호</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2. 법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td> <td>법제34조제1항제2호</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td> <td>법제34조제1항제3호</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td> <td>법제34조제2항제1호</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td> <td>법제34조제2항제2호</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td> <td>법제34조제2항제3호</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d>200만원</td> </tr> </tbody> </table>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1항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위반사항	근거법령			과태료																																			
		1차	2차	3차이상																																			
1.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1항1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2. 법제9조제4항 전단을 위반하여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해당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1항제2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 법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법제34조제1항제3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 법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성인인증장치가 부착되지 아니한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여 담배를 판매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1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5. 법 제9조제4항 후단을 위반하여 흡연구역의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2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6. 법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와 관계공무원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제34조제2항제3호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